



제418회국회(정기회)
제1차 여성가족위원회

인신매매등방지 및 피해자보호 등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검 토 보 고

〈 「특정강력범죄의 처벌에 관한 특례법」에 신설되는 피해자
등의 공판기록 등 열람·등사권 강화 관련 규정 준용〉
■ 김도읍의원 대표발의(의안번호 제2201427호)

2024. 9.

여 성 가 족 위 원 회

수석전문위원 이옥순

목 차

I . 제안경위	1
II .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1
III . 참고사항	2
IV . 검토의견	3
1. 인신매매등범죄피해자 등에 대한 변호사선임 특례 준용규정 변경	3
2. 피해자 등의 공판기록 등의 열람·등사권 강화 관련 규정 준용 ...	6

I. 제안경위

1. 제 안 자 : 김도읍의원 등 11인
2. 제 안 일 : 2024. 7. 5.
3. 회 부 일 : 2024. 7. 23.

II.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현재는 소송계속 중인 인신매매등범죄 사건의 피해자 등이 소송기록의 열람 또는 등사를 신청한 경우 「형사소송법」이 적용되어 열람 또는 등사 허가 여부가 재판장의 재량으로 결정되는데, 열람 또는 등사의 허가 여부 및 그 범위에 대한 판단 기준이 일관되지 아니하여 피해자의 신변보호나 피해회복 등 권리구제에 미흡하다는 지적이 지속적으로 제기되고 있는바, 앞으로는 보복범죄 우려와 권리구제 필요성이 큰 인신매매등범죄의 피해자나 그 법정대리인 또는 이들로부터 위임을 받은 변호사 등은 공소제기 후 검사가 보관하고 있는 서류 또는 물건과 법원이 보관하고 있는 소송기록 등을 원칙적으로 열람 또는 등사할 수 있도록 하는 등 피해자 등의 열람·등사권을 강화하려는 것임(안 제16조 및 제16조의2).

Ⅲ. 참고사항

이 법률안은 김도읍의원이 대표발의한 「형사소송법 일부개정법률안」(의안번호 제1409호) 및 「특정강력범죄의 처벌에 관한 특례법 일부개정법률안」(의안번호 제1415호)의 의결을 전제로 하는 것이므로 같은 법률안이 의결되지 아니하거나 수정의결되는 경우에는 이에 맞추어 조정되어야 할 것임.

IV. 검토의견

1. 인신매매등범죄피해자 등에 대한 변호사선임의 특례 준용 규정 변경

개정안은 「특정강력범죄의 처벌에 관한 특례법」(이하 ‘「특정강력범죄법」’이라 함)에 피해자에 대한 변호사 선임의 특례 규정을 신설함에 따라 변호사 선임과 관련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이하 ‘「성폭력처벌법」’이라 함)의 특례 규정을 준용하던 것에서 「특정강력범죄법」을 준용하도록 하려는 것임(안 제16조제2항).

현 행	개 정 안
제16조(변호사 선임의 특례) ① (생 략) ② 제1항에 따른 변호사에 관하여는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27조제2항부터 제6항까지의 규정을 준용한다. 이 경우 “피해자”는 “범죄피해자”, “피해자등”은 “범죄피해자 및 그 법정대리인”으로 본다.	제16조(변호사 선임의 특례) ① (현행과 같음) ② 제1항에 따른 변호사에 관하여는 「특정강력범죄의 처벌에 관한 특례법」 제8조의5제2항부터 제5항까지를 준용한다.

현행법 제16조는 인신매매등범죄피해자 및 그 법정대리인이 변호사를 선임할 수 있다고 규정하고, 변호사에 관하여는 「성폭력처벌법」

제27조제2항부터 제6항¹⁾까지를 준용하도록 하고 있음.

개정안에 따라 준용 규정을 변경하더라도 뒤에 언급할 열람 등사권 외엔 개정 전후 내용의 차이가 없는데, 함께 개정을 추진하는 「스토킹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법률」,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장애인복지법」, 「아동학대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등²⁾과 피해자에 대한 변호사 선임의 특례 규정의 통일성을 기한다는 점에서 개정 의미를 부여할 수 있겠음.

< 준용 규정 비교 >

「성폭력처벌법」	「특정강력범죄법 일부개정법률안」 (의안번호 제1415호)
제27조(성폭력범죄 피해자에 대한 변호사 선임의 특례) ② 제1항에 따른 변호사는 검사 또는 사법	제8조의5(피해자에 대한 변호사 선임의 특례) ② 제1항에 따른 변호사는 검사 또는 사법

- 1)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27조(성폭력범죄 피해자에 대한 변호사 선임의 특례) ① 성폭력범죄의 피해자 및 그 법정대리인(이하 “피해자등”이라 한다)은 형사절차상 입을 수 있는 피해를 방어하고 법률적 조력을 보장하기 위하여 변호사를 선임할 수 있다.
② 제1항에 따른 변호사는 검사 또는 사법경찰관의 피해자등에 대한 조사에 참여하여 의견을 진술할 수 있다. 다만, 조사 도중에는 검사 또는 사법경찰관의 승인을 받아 의견을 진술할 수 있다.
③ 제1항에 따른 변호사는 피의자에 대한 구속 전 피의자심문, 증거보전절차, 공판준비기일 및 공판절차에 출석하여 의견을 진술할 수 있다. 이 경우 필요한 절차에 관한 구체적 사항은 대법원규칙으로 정한다.
④ 제1항에 따른 변호사는 증거보전 후 관계 서류나 증거물, 소송계속 중의 관계 서류나 증거물을 열람하거나 등사할 수 있다.
⑤ 제1항에 따른 변호사는 형사절차에서 피해자등의 대리가 허용될 수 있는 모든 소송행위에 대한 포괄적인 대리권을 가진다.
⑥ 검사는 피해자에게 변호사가 없는 경우 국선변호사를 선정하여 형사절차에서 피해자의 권익을 보호할 수 있다. 다만, 19세미만피해자등에게 변호사가 없는 경우에는 국선변호사를 선정하여야 한다.
- 2) 「특정강력범죄의 처벌에 관한 특례법」의 변호사 선임 특례 규정을 준용하도록 하는 개정안과 동일한 내용의 5개 법률안 [아동·청소년 성보호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제2201418호),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일부개정법률안(제2201419호), 아동학대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일부개정법률안(제2201421호), 스톱킹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제2201422호), 장애인복지법 일부개정법률안(제2201423호) 이상 김도읍의원 대표발의]이 함께 발의되었음.

「성폭력처벌법」	「특정강력범죄법 일부개정법률안」 (의안번호 제1415호)
경찰관의 피해자등에 대한 조사에 참여하여 의견을 진술할 수 있다. 다만, 조사 도중에는 검사 또는 사법경찰관의 승인을 받아 의견을 진술할 수 있다.	경찰관의 피해자 및 그 법정대리인에 대한 조사에 참여하여 의견을 진술할 수 있다. 다만, 조사 도중에는 검사 또는 사법경찰관의 승인을 받아 의견을 진술할 수 있다.
③ 제1항에 따른 변호사는 피의자에 대한 구속 전 피의자심문, 증거보전절차, 공판준비기일 및 공판절차에 출석하여 의견을 진술할 수 있다. 이 경우 필요한 절차에 관한 구체적 사항은 대법원규칙으로 정한다.	③ 제1항에 따른 변호사는 피의자에 대한 구속 전 피의자심문, 증거보전절차, 공판준비기일 및 공판절차에 출석하여 의견을 진술할 수 있다. 이 경우 필요한 절차에 관한 구체적 사항은 대법원규칙으로 정한다.
④ 제1항에 따른 변호사는 증거보전 후 관계 서류나 증거물, 소송계속 중의 관계 서류나 증거물을 열람하거나 등사할 수 있다.	* 변호사 열람 등사권은 제8조의3 및 제8조의4에 규정
⑤ 제1항에 따른 변호사는 형사절차에서 피해자등의 대리가 허용될 수 있는 모든 소송행위에 대한 포괄적인 대리권을 가진다. ⑥ 검사는 피해자에게 변호사가 없는 경우 국선변호사를 선정하여 형사절차에서 피해자의 권익을 보호할 수 있다. 다만, <u>19세 미만피해자등</u> ³⁾ 에게 변호사가 없는 경우에는 국선변호사를 선정하여야 한다.	④ 제1항에 따른 변호사는 형사절차에서 피해자 및 그 법정대리인의 대리가 허용될 수 있는 모든 소송행위에 대한 포괄적인 대리권을 가진다. ⑤ 검사는 피해자에게 변호사가 없는 경우 국선변호사를 선정하여 형사절차에서 피해자의 권익을 보호할 수 있다. 다만, <u>19세 미만인 피해자나 신체적 또는 정신적 장애로 사물을 변별하거나 의사를 결정할 능력이 미약한 피해자</u> 에게 변호사가 없는 경우에는 국선변호사를 선정하여야 한다.

참고로 개정안은 「특정강력범죄의 처벌에 관한 특례법 일부개정법률안」(의안번호 제2201415호, 김도읍의원 대표발의)의 의결을 전제로 하므로, 해당 법률안이 의결되지 아니하거나 수정의결되는 경우에는 이에

3)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26조(성폭력범죄의 피해자에 대한 전담조사제)
④ 성폭력범죄를 진단하여 조사하는 제1항의 검사 및 제2항의 사법경찰관은 19세 미만인 피해자나 신체적인 또는 정신적인 장애로 사물을 변별하거나 의사를 결정할 능력이 미약한 피해자(이하 “19세 미만피해자등”이라 한다)를 조사할 때에는 피해자의 나이, 인지적 발달 단계, 심리 상태, 장애 정도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야 한다.

맞추어 조정되어야 할 것으로 보임.

여성가족부는 개정안에 대하여 법률의 체계를 고려하여 개정을 추진하는 다른 법률과 피해자 변호사 선임 특례 규정을 「특정강력범죄법」 조항으로 일원화하는 것은 바람직하다는 의견임.

2. 피해자 등의 공판기록 등 열람·등사권 강화 관련 규정 준용

개정안은 인신매매등범죄⁴⁾에 대한 형사절차에 관하여는 「특정강력범죄법」 제8조의3 및 제8조의4를 준용하도록 하여 「특정강력범죄법」에 신설되는 공판기록 등의 열람·등사권 강화 관련 규정을 준용하려는 것임(안 제16조의2 신설).

-
- 4) 제2조(정의) 이 법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
2. “인신매매등범죄”란 인신매매등으로서 다음 각 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죄를 말한다.
- 가. 「형법」 제2편제28장 유기와 학대의 죄 중 제274조(아동학사)의 죄, 제31장 약취(略取), 유인(誘引) 및 인신매매의 죄 중 제287조(미성년자의 약취, 유인), 제288조(추행 등 목적 약취, 유인 등), 제289조(인신매매), 제290조(약취, 유인, 매매, 이송 등 상해·치상), 제291조(약취, 유인, 매매, 이송 등 살인·치사), 제292조(약취, 유인, 매매, 이송된 사람의 수수·은닉 등), 제294조(미수범) 및 제296조(예비, 음모)의 죄
 - 나. 「성매매알선 등 행위의 처벌에 관한 법률」 제18조 및 제23조(미수범)의 죄(같은 법 제18조의 미수범에 한한다)
 - 다.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제12조(아동·청소년 매매행위)부터 제15조(알선 영업행위 등)까지의 죄
 - 라. 「청소년 보호법」 제55조부터 제57조까지의 죄
 - 마. 「아동복지법」 제71조제1항제1호, 제2호(같은 법 제17조제7호 및 제8호에 해당하는 행위에 한한다), 제3호(같은 법 제17조제10호에 해당하는 행위에 한한다) 및 제4호의 죄
 - 바. 「근로기준법」 제107조(같은 법 제7조에 해당하는 행위에 한한다)의 죄
 - 사. 「선원법」 제167조제3호의 죄
 - 아. 「장애인복지법」 제86조제2항제2호의 죄
 - 자. 「정신건강증진 및 정신질환자 복지서비스 지원에 관한 법률」 제85조제5호의 죄
 - 차. 「노숙인 등의 복지 및 자립지원에 관한 법률」 제26조제1항의 죄
 - 카. 「장기등 이식에 관한 법률」 제44조(같은 조 제1항제2호부터 제6호까지, 제8호 및 제9호의 죄에 한한다), 제45조 및 제48조(같은 조 제3호부터 제7호의 죄에 한한다)의 죄
 - 타. 가목부터 카목까지의 죄로서 다른 법률에 따라 가중처벌되는 죄

현행	개정안
<신설>	제16조의2(「특정강력범죄의 처벌에 관한 특례법」의 준용) 인신매매등범죄에 대한 형사절차에 관하여는 「특정강력범죄의 처벌에 관한 특례법」 제8조의3 및 제8조의4를 준용한다. 이 경우 “특정강력범죄”는 “인신매매등범죄”로 본다.

현행법은 제16조제2항⁵⁾에서 「성폭력처벌법」 제27조제4항⁶⁾을 준용하여 인신매매등범죄피해자의 변호사가 증거보전 후 관계 서류나 증거물, 소송계속 중의 관계 서류나 증거물을 열람·등사할 수 있도록 하고 있으나, 열람·등사의 허가 여부는 「형사소송법」 제294조의4제3항⁷⁾에 따라 재판장의 재량으로 결정됨.

그러나 열람 또는 등사의 허가 여부 및 그 범위에 대한 판단기준이

- 5) 「인신매매등방지 및 피해자보호 등에 관한 법률」 제16조(변호사 선임의 특례) ① 범죄피해자 및 그 법정대리인은 형사절차상 입을 수 있는 피해를 방어하고 법률적 조력을 보장하기 위하여 변호사를 선임할 수 있다.
② 제1항에 따른 변호사에 관하여는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27조제2항부터 제6항까지의 규정을 준용한다. 이 경우 “피해자”는 “범죄피해자”, “피해자등”은 “범죄피해자 및 그 법정대리인”으로 본다.
- 6) 「성폭력처벌법」 제27조(성폭력범죄 피해자에 대한 변호사 선임의 특례) ④ 제1항에 따른 변호사는 증거보전 후 관계 서류나 증거물, 소송계속 중의 관계 서류나 증거물을 열람하거나 등사할 수 있다.
- 7) 「형사소송법」 제294조의4(피해자 등의 공판기록 열람·등사) ③재판장은 피해자 등의 권리구제를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하거나 그 밖의 정당한 사유가 있는 경우 범죄의 성질, 심리의 상황, 그 밖의 사정을 고려하여 상당하다고 인정하는 때에는 열람 또는 등사를 허가할 수 있다.
④재판장이 제3항에 따라 등사를 허가하는 경우에는 등사한 소송기록의 사용목적에 제한하거나 적당하다고 인정하는 조건을 붙일 수 있다.
⑤제1항에 따라 소송기록을 열람 또는 등사한 자는 열람 또는 등사에 의하여 알게 된 사항을 사용함에 있어서 부당히 관계인의 명예나 생활의 평온을 해하거나 수사나 재판에 지장을 주지 아니하도록 하여야 한다.

일관되지 아니하고, 「형사소송법」 제294조의4제6항⁸⁾에 따르면 재판부의 불허 결정에 대하여 불복할 수 없다고 규정하고 있어 재판부가 허가하지 않으면 더 이상 이의를 제기할 수 없음.

한편, 「형사소송법」 제39조 단서⁹⁾에 따라 불허의 이유 또한 통지되지 아니하는 바,¹⁰⁾ 열람·등사 신청이 불허된 피해자는 불허의 구체적인 이유를 알지 못한 채 불복도 할 수 없어 피해자의 실질적인 절차참여권 보장 및 권리구제에 지장을 주고 있다는 지적이 제기됨.

이에 특정강력범죄의 피해자 등에 대하여 공판기록 등의 열람·등사권을 강화하는 내용의 「특정강력범죄의 처벌에 관한 특례법 일부개정법률안(의안번호 제2201415호, 김도읍의원 대표발의)」이 발의되었고,

개정안은 신설되는 「특정강력범죄법」 제8조의3 및 제8조의4¹¹⁾를

- 8) 「형사소송법」 제294조의4(피해자 등의 공판기록 열람·등사) ⑥제3항 및 제4항에 관한 재판에 대하여는 불복할 수 없다.
- 9) 「형사소송법」 제39조(재판의 이유) 재판에는 이유를 명시하여야 한다. 단, 상소를 불허하는 결정 또는 명령은 예외로 한다.
- 10) 다만, 재판예규 「재판기록 열람·복사 예규」는 재판장이 열람·복사를 허가하지 않는 경우 법원사무관등이 전화, 전자우편, 모사전송 등의 방법으로 그 취지를 고지하도록 하고 있음.
- 11) 「특정강력범죄의 처벌에 관한 특례법 일부개정법률안」(의안번호 제2201415호)

현 행	개 정 안
<신 설>	제8조의3(검사가 보관하고 있는 서류 등의 열람·등사) ① 특정강력범죄사건의 피해자(피해자가 사망하거나 그 심신에 중대한 장애가 있는 경우에는 그 배우자·직계친족 및 형제자매를 포함한다), 피해자 본인의 법정대리인 또는 이들로부터 위임을 받은 피해자 본인의 배우자·직계친족·형제자매·변호사(이하 “피해자등”이라 한다)는 검사에게 「형사소송법」 제266조의3제1항제1호에 따른 서류 또는 물건(이하 이 조에서 “서류등”이라 한다)의 열람 또는 등사를 신청할 수 있다. ② 검사는 제1항의 신청에 대하여 피해자등의 신변보호 또는 권리구제를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에는 열람 또는 등사를 허가하여야 한다. 다만, 「형사소송법」 제59조의2제2항제2호부터 제6호까지의 사유(이 경우 “소송기록”은 “서류등”으로 본다) 중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열람 또는 등사를 허가하지 아니할 수 있다. ③ 검사는 제2항 본문에 따라 등사를 허가하는 경우에는 서류등의 사용목적 제한이나 그 밖에 적당하다고 인정하는 조건을 붙일 수 있다. ④ 검사는 열람 또는 등사를 허가하지 아니하거나 제3항에 따라 조건을 붙여 허가하는 경우에는 열람 또는 등사를 신청한 자에게 그 이유를 통지하여야 한다.

준용하도록 함으로써 인신매매등범죄피해자, 법정대리인 또는 이들로 부터 위임을 받은 피해자 본인의 배우자·직계친족·형제자매·변호사(이하 ‘피해자등’이라 함)는 「형사소송법」 제266조의3제1항제1호12)에 따른 공소제기 후 검사가 보관하고 있는 서류·물건 및 「형사소송법」 제294조의4제1항13)에 따른 법원이 보관하고 있는 공판기록 등을 원칙적으로 열람·등사할 수 있도록 하려는 것임.

즉, 검사 또는 재판장은 열람·등사 신청에 대하여 피해자등의 신변 보호 또는 권리구제를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 이를 허가하도록 하고,

<신 설>	⑤ 제1항에 따라 서류등을 열람 또는 등사한 자는 열람 또는 등사로 알게 된 사항을 사용하는 경우 부당히 관계인의 명예나 생활의 평온을 해하거나 수사와 재판에 지장을 주지 아니하도록 하여야 한다. ⑥ 제4항에 따른 통지를 받은 자는 해당 기록을 보관하고 있는 검찰청에 대응한 법원에 검사의 처분에 대한 취소 또는 변경을 신청할 수 있다. ⑦ 제6항의 불복신청에 관하여는 「형사소송법」 제409조 및 제413조부터 제418조까지를 준용한다. 제8조의4(피해자 등의 공판기록 등 열람·등사) ① 재판장은 피해자등이 「형사소송법」 제294조의4제1항에 따른 소송기록의 열람 또는 등사를 법원에 신청한 경우에는 같은 조 제3항에도 불구하고 피해자등의 신변보호 또는 권리구제를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되면 결정으로 열람 또는 등사를 허가하여야 한다. 다만, 「형사소송법」 제59조의2제2항제2호부터 제6호까지의 사유 중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 또는 심리의 상황에 비추어 상당한 이유가 있는 경우에는 열람 또는 등사를 허가하지 아니할 수 있다. ② 피해자등은 증거보전 후 관계 서류나 증거물의 열람 또는 등사를 재판장에게 신청할 수 있다. 이 경우 제1항 및 「형사소송법」 제294조의4제2항, 같은 조 제4항부터 제7항까지를 준용한다.
--------------------	--

12) 「형사소송법」 제266조의3(공소제기 후 검사가 보관하고 있는 서류 등의 열람·등사) ① 피고인 또는 변호인은 검사에게 공소제기된 사건에 관한 서류 또는 물건(이하 “서류등”이라 한다)의 목록과 공소사실의 인정 또는 양형에 영향을 미칠 수 있는 다음 서류등의 열람·등사 또는 서면의 교부를 신청할 수 있다. 다만, 피고인에게 변호인이 있는 경우에는 피고인은 열람만을 신청할 수 있다.

1. 검사가 증거로 신청할 서류등

13) 「형사소송법」 제294조의4(피해자 등의 공판기록 열람·등사) ①소송계속 중인 사건의 피해자(피해자가 사망하거나 그 심신에 중대한 장애가 있는 경우에는 그 배우자·직계친족 및 형제자매를 포함한다), 피해자 본인의 법정대리인 또는 이들로부터 위임을 받은 피해자 본인의 배우자·직계친족·형제자매·변호사는 소송기록의 열람 또는 등사를 재판장에게 신청할 수 있다.

예외적으로 검사는 국가의 안전보장, 공공의 질서유지 등 「형사소송법」 제59조의2제2호부터 제6호까지의 사유¹⁴⁾에 해당하는 경우 허가하지 않을 수 있도록 하며, 재판장은 국가의 안전보장, 공공의 질서유지 등 「형사소송법」 제59조의2제2호부터 제6호까지의 사유에 해당하는 경우 또는 심리의 상황에 비추어 상당한 이유가 있는 경우 허가하지 않을 수 있도록 함.

또한 검사가 열람·등사를 불허하는 경우 불복할 수 있는 절차를 마련하는 한편, 검사 또는 재판장이 열람·등사를 허가하지 아니하거나 조건을 붙여 허가하는 경우에는 열람·등사를 신청한 자에게 그 이유를 통지하도록 함.

참고로, 재판장이 피해자의 공판기록 등의 열람·등사 신청에 대한 결정을 할 때 의무적으로 그 이유를 통지하도록 하는 내용의 「형사소송법 일부개정법률안(의안번호 제2201409호, 김도읍의원 대표발의)」과 「특정

14) 「형사소송법」 제59조의2(재판확정기록의 열람·등사) ②검사는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소송기록의 전부 또는 일부의 열람 또는 등사를 제한할 수 있다. 다만, 소송관계인이나 이해관계 있는 제3자가 열람 또는 등사에 관하여 정당한 사유가 있다고 인정되는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1. (생략)
2. 소송기록의 공개로 인하여 국가의 안전보장, 선량한 풍속, 공공의 질서유지 또는 공공복리를 현저히 해할 우려가 있는 경우
3. 소송기록의 공개로 인하여 사건관계인의 명예나 사생활의 비밀 또는 생명·신체의 안전이나 생활의 평온을 현저히 해할 우려가 있는 경우
4. 소송기록의 공개로 인하여 공범관계에 있는 자 등의 증거인멸 또는 도주를 용이하게 하거나 관련 사건의 재판에 중대한 영향을 초래할 우려가 있는 경우
5. 소송기록의 공개로 인하여 피고인의 개선이나 갱생에 현저한 지장을 초래할 우려가 있는 경우
6. 소송기록의 공개로 인하여 사건관계인의 영업비밀(「부정경쟁방지 및 영업비밀보호에 관한 법률」 제2조제2호의 영업비밀을 말한다)이 현저하게 침해될 우려가 있는 경우
7. (생략)

강력범죄법」의 특례 규정을 준용하도록 하는 개정안과 동일한 내용의 5개 법률안 [아동·청소년 성보호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제2201418호),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일부개정법률안(제2201419호), 아동학대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일부개정법률안(제2201421호), 스토킹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제2201422호), 장애인복지법 일부개정법률안(제2201423호) 이상 김도읍의원 대표발의]이 함께 발의되었음.

한편, 개정안의 배경을 살펴보면, 제21대 국회에서 「특정강력범죄의 처벌에 관한 특례법 일부개정법률안(의안번호 2126554호, 정부 제출)」 및 「형사소송법 일부개정법률안(의안번호 2126555호, 정부 제출)과 「특정강력범죄의 처벌에 관한 특례법 일부개정법률안(의안번호 2126554호, 정부 제출)」에서 규정하고 있는 피해자의 재판기록 등의 열람·등사에 관한 특례 규정을 준용하도록 하는 내용의 6건의 개정법률안이 정부안¹⁵⁾으로 제출되었으나 임기만으로 폐기되었음.

제21대 국회에 제출된 「특정강력범죄의 처벌에 관한 특례법 일부개정법률안(의안번호 2126554호, 정부 제출)」과 관련, 법원행정처는 피해자의 공판기록 등 열람·등사권 강화의 경우 ① 피해자가 소송기록을 모두

15) <제21대 국회 제출 개정법률안>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의안번호 제2126556호, 정부 제출)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일부개정법률안(의안번호 제2126559호, 정부 제출)
아동학대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일부개정법률안(의안번호 제2126560호, 정부 제출)
장애인복지법 일부개정법률안(의안번호 제2126553호, 정부 제출)
인신매매등방지 및 피해자보호 등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의안번호 제2126558호, 정부 제출),
스토킹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의안번호 제2126557호, 정부 제출)

제22대 국회에 발의된 「특정강력범죄의 처벌에 관한 특례법 일부개정법률안(의안번호 제2201415호, 김도읍의원 대표발의)」의 경우 재판장의 허가 예외 사유에 “심리의 상황에 비추어 상당한 이유가 있는 경우”를 추가하여 재판장이 허가하지 않아도 되는 예외사유를 넓히고 있으며, 재판장의 공판기록 열람·등사 불허가결정에 대한 즉시항고 제도는 도입하지 않고 있는바¹⁷⁾, 법원행정처의 의견을 고려한 것으로 보임.

17) <형사소송법 개정안 비교>

현행	형사소송법 일부개정법률안 (의안번호 2126555호, 정부 제출)	형사소송법 일부개정법률안 (의안번호 2201409호, 김도읍의원 대표발의)
제294조의4(피해자 등의 공판기록 열람·등사) ①소송계속 중인 사건의 피해자(피해자가 사망하거나 그 심신에 중대한 장애가 있는 경우에는 그 배우자·직계 친족 및 형제자매를 포함한다), 피해자 본인의 법정대리인 또는 이들로부터 위임을 받은 피해자 본인의 배우자·직계친족·형제자매·변호사는 소송기록의 열람 또는 등사를 <u>재판장에게</u> 신청	제294조의4(피해자 등의 공판기록 열람·등사) ①----- ----- ----- ----- ----- ----- ----- ----- ----- ----- 법원에	제294조의4(피해자 등의 공판기록 열람·등사) ① (헌행과 같음)

결론적으로, 개정안은 인신매매등범죄의 피해자등에 대하여 신변보호나 권리구제의 필요성이 인정되면 검사 보관 기록, 공판기록 및 증거보전 절차 관계 기록의 열람·등사를 원칙적으로 허가하고, 열람·등사를 신청한 자에게 불허 시 이유를 통지하도록 하며, 검사의 열람·등사 신청 불허가 결정에 대한 불복 절차를 마련하려는 것으로, 피해자 보호 및 권리구제의 측면에서 필요한 입법조치로 보임.

참고로 개정안은 「형사소송법 일부개정법률안」(의안번호 제

할 수 있다.	-----.	
②재판장은 제1항의 신청이 있는 때에는 지체 없이 검사, 피고인 또는 변호인에게 그 취지를 통지하여야 한다.	②법원----- ----- -----.	② (현행과 같음)
③재판장은 피해자 등의 권리구제를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하거나 그 밖의 정당한 사유가 있는 경우 범죄의 성질, 심리의 상황, 그 밖의 사정을 고려하여 상당하다고 인정하는 때에는 열람 또는 등사를 허가할 수 있다.	③법원----- ----- ----- -- 결정으로 열람 또는 등사를 허가--.	③ (현행과 같음)
④재판장이 제3항에 따라 등사를 허가하는 경우에는 등사한 소송기록의 사용목적 제한하거나 적당하다고 인정하는 조건을 붙일 수 있다.	④ 법원은 제3항에 따라 등사를 허가하는 경우에는 등사한 소송기록의 사용목적 제한이나 그 밖에 적당하다고 인정하는 조건을 붙일 수 있다.	④ (현행과 같음)
<신 설>	⑤ 법원은 열람 또는 등사를 허가하지 아니하거나 제4항에 따라 조건을 붙여 허가하는 경우에는 열람 또는 등사를 신청한 자에게 그 이유를 통지하여야 한다.	
⑤ (생 략)	⑥ (현행 제5항과 같음)	⑤ (현행과 같음)
⑥제3항 및 제4항에 관한 재판에 대하여는 불복할 수 없다.	⑦ 제3항 및 제4항의 결정에 대하여는 즉시항고를 할 수 있다.	⑦ 재판장은 열람 또는 등사를 허가하지 아니하거나 제4항에 따라 조건을 붙여 허가하는 경우에는 열람 또는 등사를 신청한 자에게 대법원규칙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그 이유를 통지하여야 한다.

2201409호, 김도읍의원 대표발의) 및 「특정강력범죄의 처벌에 관한 특례법 일부개정법률안」(의안번호 제2201415호, 김도읍의원 대표발의)의 의결을 전제로 하므로, 해당 법률안이 의결되지 아니하거나 수정의결되는 경우에는 이에 맞추어 조정되어야 할 것으로 보임.

여성가족부는 개정안에 대하여 피해자의 권리구제 및 실체적 진실 발견에 기여하기 위하여 법률 개정이 필요하다는 의견임.

문 의 처
02)6788-5644